

보도시점 2026. 5. 11.(월) 12:00 (화요일 조간) 배포 2026. 5. 8.(금)

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본격 시행

- 화학물질등록 시 필요한 시험자료 등의 공동생산·활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비용산정 관련 이견 발생 시 정부가 조정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.

이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,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.

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시 갖춰야 할 ‘등록신청자료’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.

또한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다.

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.

그러나 협의체 내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등록기업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여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.

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·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 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. 아울러,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*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사례,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다.

*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(kreach.mcee.go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

만약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.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해당기업은 자료의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, 사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. 이를 통해 기업 간 자료 사용 비용에 대한 이견이 곧바로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후발 등록기업의 과도한 부담이나 영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 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”라며, “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경화 (044-201-6770)
		담당자	사무관	윤희창 (044-201-6769)
	담당자	사무관	송동복 (02-6050-1302)	
	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	책임자	과 장	성창호 (032-560-8660)
담당자		사무관	김현경 (032-560-8671)	

□ **제도 도입 배경**

- ①등록신청자료의 ②공동제출시 기업간 비용 분담 비율 또는 기존 자료의 ③공동활용과 관련 적정 비용에 대한 이견 등 발생시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에 애로

※ 화학물질 제조·수입시 사전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확보하여 등록 필요

①(등록신청자료) 화학물질 등록시 구비해야될 시험자료 등

②(공동제출) 기존화학물질 등록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험자료의 일부를 공동으로 확보·제출

③(공동활용) 후발 등록기업이 자료 소유자의 동의하에 既등록된 기존·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등록 시 활용

□ **분쟁 조정 절차**

- (조정신청) 협의체 구성원 간 자료의 선택·생산 및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 또는 기존 자료의 사용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 신청*

*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을 통해 신청

※ (분쟁조정 신청자) ①협의체 구성원, ②기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 활용하려는 자

- (분쟁조정) 비용분담·비용계상의 원칙*을 고려하여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하고,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수락을 권고

* △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·공정한 방법으로 결정, △객관적·신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, △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

- (제출유예) 기존 자료의 사용 동의에 관한 조정안 결렬 시 해당 자료의 제출유예 신청(→화학물질안전원) 및 등록 추진

□ **기대효과**

- 과도한 비용부담 등 제도 이행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원활한 등록이행 지원
- 기존 시험자료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줄이고,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